

## TBT(무역상 기술장벽) 관련 WTO 내 논의 동향과 시사점

장용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(yjjang@kiep.go.kr, Tel: 3460-1056)  
남호선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(hsnam@kiep.go.kr, Tel: 3460-1088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서론                  | 3. 최근 WTO의 TBT 논의 동향 |
| 2.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 | 4. 정책시사점             |

### 주요 내용

- ▶ 무역상 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이란 무역상대국간의 서로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제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함.
- 기술규제란 사람의 안전 보호, 보건, 동식물의 보호,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.
- 수출대상국이 상이한 기술규제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, 규제내용조사, 다른 생산설비 설치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음.
- ▶ 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의 신규기술규제에 대한 통보와 이와 관련된 특정 무역현안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
- 2004년 이후 신규기술규제가 급증하는 추세이고,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2005년과 2008년에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.
- 특정 무역현안 또한 200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,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- 이러한 사실은 최근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.
- ▶ WTO는 정당한 목적의 기술규제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보

장하고 있으나, 필요 이상의 규제조치에 대한 감시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- WTO/TBT 협정문 발효 이후, WTO/TBT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토하고 있으며, 최근 2009년 11월에 제5차 3년 주기 검토회의를 개최함.
- 제5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TBT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방안들과 민간표준(Private Standard)에 대해 주로 논의함.
- ▶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기술규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BT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필요함.
-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.
- 또한 최근 집중 논의되고 있는 민간표준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.
- 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, 질의처 일원화, TBT 중앙사무국의 위상 강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.

# 1. 서론

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2008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의 위축과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.

- WTO 사무국이 최근 발간한 2009년 『세계무역보고서(World Trade Report)』에서는 2008년 세계 상품교역량 증가율은 2%로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09년의 상품교역량은 10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동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위기극복을 위해 처방한 금융구제 및 재정확대조치들이 무역장벽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.

■ 글로벌 경제위기가 보호무역주의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.

- 2008년 11월 워싱턴, 2009년 4월 런던에서 각각 개최된 G-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조치의 동결(stand-still)과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성향의 조치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■ FTA/RTA 체결의 증가로 인해 평균 관세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보호무역 수단으로서의 관세의 의미는 제한됨.

- 하지만 비관세장벽의 경우, 성격상 존재의 측정이 어려우며, 불투명성으로 인해 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상의 보호무역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.

- 따라서 현재 국제통상에서 각국의 관심은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(SPS: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) 또는 무역상 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등을 이용한 비관세조치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임.

■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무역상대국간의 서로 상이한 표준, 기술 규제, 시험인증절차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함.

- 기술규제란 사람의 안전 보호, 보건, 동식물의 보호, 환경

보호,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이유로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.

○ 예를 들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(NHTSA)의 경우, 사람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차에 대해 측면 에어백 장착의 무화 및 충돌시험 기준 강화 등의 기술규제를 2009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

○ 한국은 환경보호 및 소비자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유기 가공식품인증제를 2008년 6월부터 시행함.

- 기술규제는 제품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공하는 등 제품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- 하지만 수출대상국이 상이한 기술규제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, 규제내용조사, 다른 생산설비 설치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.

- 기술규제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시험인증절차 또한 중복적인 검사 요구, 과도한 검사시간 소요, 검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기술장벽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음.

■ 2009년 WTO/TBT 위원회 연례보고서는 WTO 회원국들의 신규기술규제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특정 무역현안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.

-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0년대 후반부터 기술규제 통보와 특정 무역현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- 이러한 증가에는 중국, 미국, EU의 신규기술규제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.

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,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규제의 부정적인 측면, 즉 수출에 대한 장벽과 관련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.

- 본고에서는 무역장벽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TBT의 최근 현황과 WTO 내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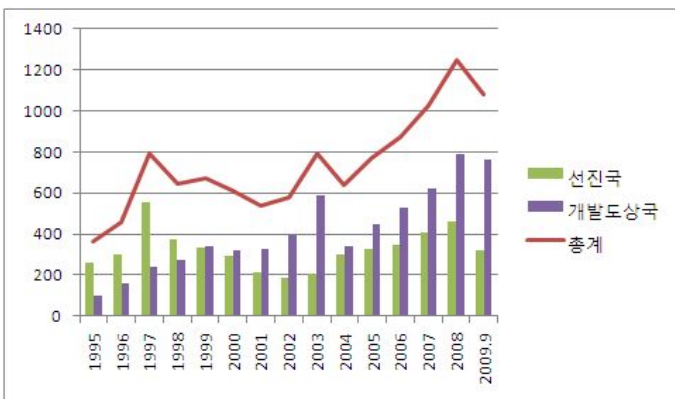
## 2.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

-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에 제출되고 있는 기술규제 통보문과 특정 무역현안(Specific Trade Concerns)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.
- 통보문에는 기술규제의 목적과 품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각국의 기술규제 현황 파악에는 용이하나, 그것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음.
- 특정 무역현안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이익을 제기하는 것으로, 그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.

### 가. 기술규제 통보문

- 2004년 이후 연도별 통보문의 제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,251건을 기록하였으며, 2009년 9월 현재 1,082건이 통보되어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.
- 1997년 통보건수의 급증은 네덜란드(285건)를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규제 증가에 의한 것이며, 2003년의 급증은 아르헨티나(83건), 브라질(71건) 등 중남미 개도국의 기술규제 증가에 의한 것임.
- 2008년에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통보가 모두 증가하였으며, 이로 인해 기술규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그림 1. 연도별 기술규제 통보건수



주: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IMF의 분류를 따르고, 여기에 EU를 추가하였음.  
 자료: WTO, 각 연도별,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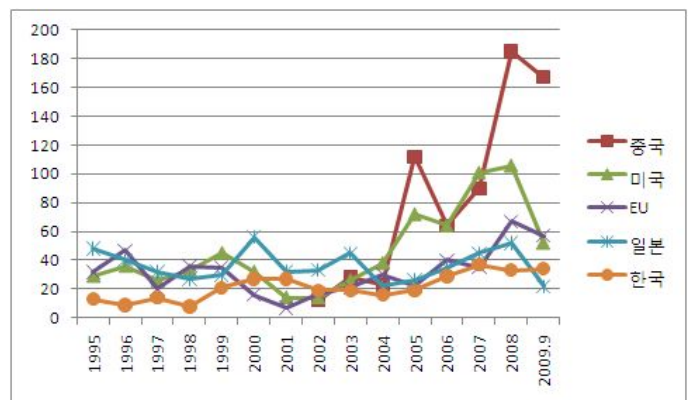
- 특히 2004년 이후의 증가 추세는 개발도상국들의 기술규제 통보건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임.

- 1995년 당시 통보건수 기준으로는 선진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 비중이 72%에 달하였으나 1999년 개도국의 비중이 최초로 50%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2009년 9월 현재 70%를 넘고 있음.
- 이는 과거에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의 무역장벽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, 최근에는 개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.

- 지금까지 WTO 회원국들 중 중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 통보문을 제출하였는데, 2008년에는 185건으로 급증하였고, 2009년 9월 현재 기준 총 167건이 통보되어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.

- 중국이 WTO에 가입한 초기(2001~05년)에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높은 것은 자국의 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.
  - 한 예로, 중국은 WTO의 의무 이행, 국제적 인증제도 추세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자동차, 전기제품 등 19개 품목에 '단일강제인증제도'를 적용하였고, 2006년 이를 159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였음.
- 최근 중국의 기술규제 급증은 1)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선진국 수준의 품질요건을 요구하는 기술규제, 2) 일부 정치적 요인이 강한 기술규제, 3)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도입되는 규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음.

그림 2. 주요국별 기술규제 통보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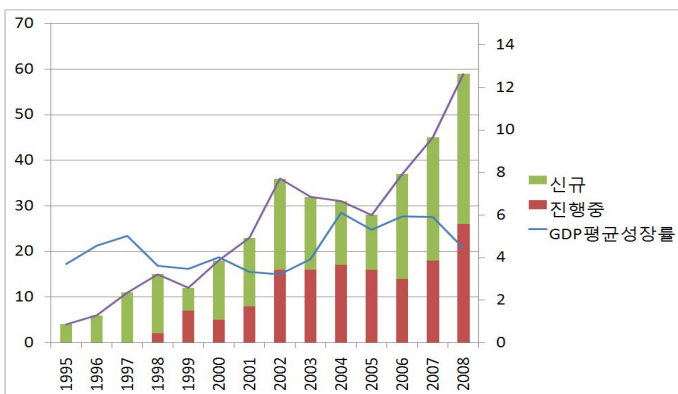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WTO, 각 연도별,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.

## 나. 특정 무역현안

- 특정 무역현안 건수는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총 5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.
- 이슈별로 보았을 때, 1995년 이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과 관련된 특정 무역현안이 145건 제기되어, 추가정보 및 설명을 요구한 특정 무역현안(159건)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.
- 1995년 이후 제기된 특정 무역현안이 총 248건임을 고려해 볼 때, 이의가 제기된 기술규제의 절반 이상이 타국에 무역 저해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음.
-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감소했던 1998년, 2002년 및 2008년에 특정 무역현안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시 각국이 기술규제를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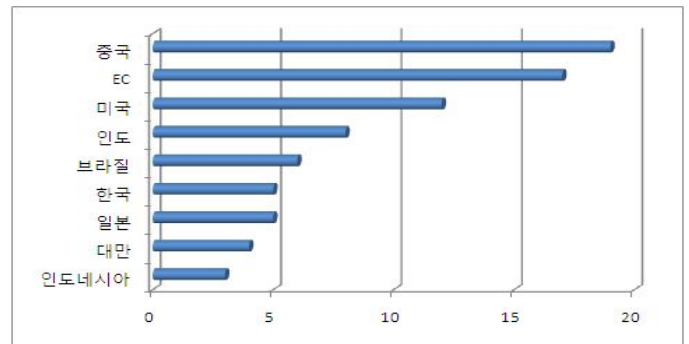
그림 3. 연도별 특정 무역현안 건수



자료: WTO, 각 연도별, *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*.

- 2005년 이후 특정 무역현안을 제기당한 건수를 주요국별로 살펴보면, 중국이 총 1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, EC, 미국이 그 뒤를 이음.
- 2005년 이후 중국은 WTO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은 기술규제와 특정 무역현안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.
-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 중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기술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 것으로 해석됨.

그림 4. 국가별 특정 무역현안 분류(2005년 이후)



자료: WTO, 각 연도별 *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*로부터 저자 재작성.

## 3. 최근 WTO의 TBT 논의 동향

### 가. WTO/TBT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제5차 3년 주기 검토

- 1995년 1월에 발효된 WTO/TBT 협정은 WTO 내에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, 3년을 주기로 TBT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자간에 검토하도록 명시함.
- 1997년 이후 1~4차 3년 주기 검토가 이루어졌으며, 제5차 3년 주기 검토는 2009년 11월에 제3차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루어짐.
- 3년 주기 검토에서는 지난 3년 동안 WTO/TBT 위원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검토, 이에 따른 결정 및 권고안, 그리고 향후 과제를 담은 검토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짐.
- 이번 제5차 3년 주기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짐.
- 첫째, 신규기술규제 통보문 관련 몇 가지 추가 권장사항
- 둘째, 민간표준(Private standards)에 대한 선진국-개도국 간의 대립
- 기술규제 통보문과 관련하여 신규 기술규제 입안 시 공공의견 수렴, 규제영향평가(RIAs: Regulatory Impact Assessment) 수행, 관련 국제표준 고려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.
- 기존 3년 주기 검토에서 WTO/TBT 위원회는 기술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이 신규기술규제를 입안하기 전에

통보문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.

- 기존 통보문 형식의 경우, 신규기술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(입안국가, 예정입안날짜, 내용, 목적, 산업분류, 질의 기관 연락처)만을 포함하고 있음.

- 따라서 새로운 권고안의 경우 신규기술규제의 투명성 제고 이상으로 규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, 무역에 대한 효과 등 TBT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권고함.

- 한편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간표준에 대해 일부 개도국들이 이를 무역 저해 요인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관련 워크숍 개최 및 WTO 사무국 차원의 조사활동을 제안함.

- 민간표준이란 공식적으로 표준화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관에서 개발된 표준으로 간주되나,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.

- 미국, EU는 민간표준의 불명확한 정의 문제와 법률적으로 TBT 협정과 무관한 점을 들어 TBT 위원회 논의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고 관련 워크숍의 개최 또한 반대함.

#### 나.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 및 제5차 3년 주기 검토에 대한 평가

-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무역원활화에 있어 TBT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의 장보다는 자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변명의 장으로 성격이 변질되어가고 있음.

- 회의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무역상대국의 무역현안 제기에 대한 대상국의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데 할애함.

- 특히 EU,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러한 회의 형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
- 따라서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가 선진국들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당한 명분쌓기의 기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.

- TBT 문제 해결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, 새롭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.

- 열악한 제도와 기술을 가진 개도국은 무역상대국, 특히 선진국의 기술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.

- 세계은행 정책자료<sup>1)</sup>는 선진국의 신규기술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순응비용(compliance costs)이 더 높음을 보임.

- 이를 통해 TBT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개도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지원이 필요함.

- 이와 관련, 기존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(Technical assistant)와 특별우대조치(SDT: Special & Differential Treatment)를 언급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.

- 따라서 선진국들이 3년 주기 검토를 포함하는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과는 반대로, 개도국의 경우 형식적인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.

- 선진국, 개도국을 포괄하는 다수 참여의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가 되어야 함.

- 또한 보다 구체적인 3년 주기 검토를 위해 학술적인 연구활동 및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최근 OECD의 경우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의 TBT 효과 분석과 TBT 방지에 대한 정책개발 및 효과 분석에 대해 국제공조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,

- WTO 또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TBT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,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년 동안의 활동을 검토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.

- 최대 쟁점사항인 민간표준은 특성상 국가 강제적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설정되었으므로, TBT 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평가함.

- 하지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민간표준 현황 파악 및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1)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. 2512.

## 4. 정책시사점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규기술규제 및 이에 대한 특정 무역 현안의 건수 급증은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옴.
-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, 급증하고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경제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.
- 따라서 국내에서는 TBT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가 필요함.
- 최근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신규기술규제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이들 기술규제에 대한 원인 규명 및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.
-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.
- 각국이 제출한 통보문을 토대로 이들 신규기술규제가 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한 것인지, 그리고 회원국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제정된 기술규정들을 통보한 결과인지, 혹은 무역보호를 위한 기술장벽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.
- 하지만 기술규제는 각국의 상이한 제도와 법률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하고 불투명하므로 계량화하기 어렵고, 수출에 대한 피해를 측정하기가 어려움.
- 문제해결을 위해 TBT에 대한 연구는 WTO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통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체제에서 이루어져야 함.
-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제2차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'기술규제 급증의 원인 규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'을 위한 작업반 설치를 제안하였음.
- 하지만 이번 2009년 11월 제3차 WTO/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작업반 설치에 대한 구체적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음.
- 따라서 WTO/TBT 위원회에 작업반 설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
- 작업반으로부터의 연구결과는 국내 TBT 대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, 작업반에서의 적극적 활동은 WTO/TBT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가위상 정립에 도움을 줄 것임.
- 제5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민간표준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바, 민간표준에 대한 국내 연구가 필요함.
- 먼저 민간표준의 국내 현황 파악, 주요 교역국의 민간표준 현황 파악 및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.
-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민간표준에 대해 선진국-개도국 간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.
- TBT 문제는 과학과 공학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국제협상 및 통상법 등을 망라하여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기술지식, 국제통상 및 통계 분석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 취약한 자본과 정보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TBT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이들 전문분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.
-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의견제시 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TBT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3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질의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- 한국은 제품 종류별로 질의처가 나누어져 농수산물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, 의약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, 공산품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이 질의를 담당하고 있음.
- 대부분의 회원국은 하나의 통합된 질의처를 가지고 있으며 복수의 질의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기술규제,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이 규제의 종류에 따라 질의처를 운영

하고 있는 실정임.

- 복수의 질의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처간에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이의제시 시 일관된 대응을 하기 어려우며, 부처간 혼선 및 반복적인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음.

■ TBT 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TBT 중앙사무국 ([www.tbt.kr](http://www.tbt.kr))이 2008년 9월에 출범하였으나 예산부족,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그 역할은 아직 미미함.

- 현재 TBT 중앙사무국은 TBT 관련 정보 제공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있음.
- 제5차 3년 주기 검토에서는 TBT와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음.
- 따라서 TBT 중앙사무국이 주무부서로서 TBT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방안이 요구됨. **KIEP**